國家와 警察을 사랑하는
大韓民國在鄕警友會
(www.ex-police.or.kr)

警友新聞

발행처 :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우 : 100-821) 서울시 중구 신당동 171번지
전 화 : 2234-1881 FAX : 2231-7557
발행인 : 具 弘 壹 편집인 : 玄 誠 一
등록번호 : 문화다05675
창간일 : 1970년 12월 13일

☎ 구독안내 : 02-2234-1881 National Police Newspaper 2005년 8월 5일 (금) 제1330호

檢事調書의 증거능력 인정은 공판중심주의에 역행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영향력 더욱 확대 우려

최근 의결된 사법개혁 추진위원회의 증거법 개정안은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검사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공히 불인정(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인정)하겠다는 것이 중론이었으나,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강화된 特信 상태에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 되었다.

경찰청은 증거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온 국민이 염원하는 공판중심주의 확립에 역행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판중심주의 확립은 현 '조서 의존적 사법관행'의 폐해를 극복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거역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검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현행 '조서 의존적 사법관행과 그 폐해'는 그대로 존치될 수 밖에 없으며,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 모두 가장 편의하고 효율적인 입증 수단인 조서에 의존하려는 유혹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현행보다 조서의 증거능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현행보다 '강화된 特信상태'에서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이나 그 내용을 보면 지금보다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시키고 있다는 것. 또한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수사과정 기록제도, 변호인 참여권 등을 법제화하여 수사과정의 투명성·공정성과 피의자 등의 방어권 보장 장치를 강화하였다 하나, 수사실무상 조서 작성시 이를 준수하였다는 모양새는 간단히 갖출수 있어 조서가 쉽게 법정에 증거자료로 제출되지 못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편의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는 제도의 속성상 법원의 엄격한 해석과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다

셋째, 수사와 재판의 현실상 검찰권이 현행보다 더욱 확대·심화된다는 것이다.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그 인정요건마저 크게 완화되어 버리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보장된 입증수단이 조서, 영상녹화물, 조사자 법정증언 등으로 크게 확대되게 되므로 검사는 여러 가지 입증수단을 편의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검사에게 '보다 우수하고 다양한 성능을 지닌 사법적 무기'를 부여하게 되므로, '무기대등의 원칙'에 의한 피의자·피고인 인권보장은 더욱 요원해진다는 주장이다.

넷째, 경찰과 검찰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간 증거능력을 차등 인정하여 '이중조사의 폐해' 등 국민피해 해소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경찰 작성 피신조서와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차등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수사과정에서 가장 심한 국민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이중조사의 폐해'는 그대로 존치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다섯째, 수사권 조정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국민여론조사 결과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의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서도 나타나듯이, 수사권 조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작성 조서에 우월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의 주재자임을 확인·천명해주는 격이며, 검찰에서는 이를 명분으로 수사권 조정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무마시키려 할 것은 자명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사개추위의 증거법 개정안은 국민에게 약속한 사법개혁 방향에 부합하지도 않고,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면서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 확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실 여건상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이 불가피하다면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실히 확보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변호인 참여하에서만 特信상태를 인정하는 등 개정안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特信상태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경찰과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동일하게 인정함으로서, 최소한 현행 피의자 신문조서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라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개추위의 의결안은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정부안으로 제출되어 형소법 개정안으로 연결되고,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정기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에게 약속한 사법개혁 방향과도 不一致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 개최 경찰청은 최근 전국경찰지휘부 회의를 개최하고 대테러대비태세 확립, 하절기 민생치안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집 5면 / 수사권 조정에 대한 허준영 경찰청장의 소신을 들어 본다.

檢·警 수사권 조정은 시대적 요구

- 청와대와 국회의 현명한 판단 기대 -

—— 徐 輔 鶴 (경희대 법대 교수, 검·경 수사권 조정자문위원)

만시지탄이지만 참여정부 들어 검·경간의 수사권조정 노력이 본격화된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검·경이 지난해 9월 '수사권조정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데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초까지는 각계 대표가 참여한 '검·경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가 15차례의 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수사권 조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바 있다. 그러나 양 기관의 첨예한 대립으로 아직 구체적인 조정안은 타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최근 검·경간의 수사권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됨으로써 이제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의 장은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여론을 살피면서 내부적으로 조정안을 만들기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친 만큼 이제는 국민의 이익과 한국형사사법시스템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 합리적인 수사권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와 같이 검찰이 수사권 및 기소권을 독점하고 경찰을 일방적으로 지휘·명령하는 상명하복식 수사권구조가 '자율과 책임', '분산과 균형'을 강조하는 새로운 시대정신과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음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정부조직법상 각 별개의 기관인 검찰이 경찰을 일방적으로 지배·조정함으로써 민주사회의 권력분립원칙이 침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권력의 독주 및 견제장치의 부재라는 큰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독점적·일방적 수사권구조는 총체적으로 수사권의 부실행사(은폐·축소·편파수사·부당간섭) 및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인권보장 약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는 원인도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검·경간의 관계를 현재의 일방적·지배적 관계에서 균형적 관계로 바로 잡고 수사권력 상호간을 감시와 견제의 관계에 놓음으로써 특정권력의 독주를 예방하고, 수사왜곡을 방지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며, 나아가 수사과정의 인권침해에 대한 쌍방의 감시를 통해 인권보장적 수사관행의 정착을 촉진하는 등 법치국가 형사사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검·경간의 합리적인 수사권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중차대한 사법개혁의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앞서 언급한 검·경 수사권조정자문회의와 공청회에서 '송치전 경찰수사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사법경찰관의 수사주체성 인정, 동법 제196조에 검·경간의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합리적인 통제를 위해 경찰에 전건송치의무 부과, 검찰에 '수사준칙제정권' 보장, 경찰수사결과 및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관련자의 '검찰이의제도' 신설, 송치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인정 등을 제안한바 있다. 이 정도는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합리적인 통제를 보장하면서도 검·경간의 관계를 균형적 관계로 바로 잡고 경찰수사에 권한과 아울러 책임을 부여하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생각한다. 검찰은 소송법의 개정 없이 수사실무의 변경을 통해 수사권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수사권의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민주적으로 분점할 뜻이 전혀 없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선진형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에 대한 법원의 사법통제가 더욱 강화되어야만 한다. 반면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은 범죄수사에 있어서 상호 협조하면서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나아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공소기관인 검찰은 경찰수사의 인권침해 감시와 송치된 수사결과의 사후감독 및 본래의 기능인 공소유지에 힘써야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권력형 비리사건 등에 집중하는 것으로 족하다. 최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어느 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검·경간의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과 역할 재정립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해방 후 60년을 거치면서 민주화를 이룩해 내고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올려놓은 현재의 우리사회가 원하는 시대적 요구인 것이다. 청와대와 국회가 민의를 잘 살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이제는 일본 군국주의 시대의 검사독점적 수사구조에서 벗어나

선진국형의 檢·警 수사권 공유체제로 발전되어야 한다!!!

- 1962년 신설된 헌법 제12조 3항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경찰의 수사권 조정건의는 완전한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화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상호협력적인 檢·警 관계로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1. 日帝의 잔재인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일본경찰은 이미 57년전(1948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전근대적인 **상명하복의 檢·警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발전시키고,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갖게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검찰은 존경을, 경찰은 더 큰 신뢰를 받고 있다.**
우리도 **성숙된 민주사회의 여건에 맞게 인권보호를 위한 적정한 통제장치를 두고, 경찰과 검찰은 경쟁과 협력의 상호보완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2. 수사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사분권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지구상에 수사권 없는 경찰은 한국뿐이며 오늘날 전세계의 형사소송절차는 기소의 주체와 수사의 주체로 분리되어 경찰과 검찰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추세에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헌법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사권(개시·종결), 공소권, 형집행권 등을 독점한 막강한 검찰이 1차 수사기관화 하고 있으므로 **檢·警간 수사권의 분배로 견제와 경쟁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면 국민의 권익과 인권은 크게 신장될 것으로 확신한다.**

3. 더 이상 자질문제, 인권보호라는 구실로 경찰수사권 현실화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지난 20년간 4년제 경찰대학을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정예간부의 양성, 사법·행정고시 합격자 특채, 간부후보생 배출, 법학전공 수사요원 특채, 조사요원 간부화, 인권담당관 배치, 유급 자문변호사제 도입, 피해자 보호팀 운영 등의 **자질향상과 인권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었고** 순경채용자의 75%가 대졸학력 이상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해방이후 60년간 주장되어 온 경찰**수사권의 시기상조론은 이제 그 명분을 잃었다.**

4. 수사분권 요구는 기관 이기주의적 밥그릇 다툼이 아닙니다.

범죄사건(연간 160여만건)의 97%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법률상 수사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연간 사건관련자 150여만명이 경찰과 검찰에서 중복조사를 받음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국민의 불편해소와 사법서비스 편익증진을 위해 경찰의 독자수사권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大韓民國在鄕警友會 120萬 會員 一同

※ 2005년 6월 20일
조선·한겨레 신문에 성명서 발표